

제176회 영등포구의회
2013년도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3. 7. 5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

1. 경 과

의안 제219호로 2013년 6월 2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을
위하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적립·운영되고 있는
자활기금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·보완하여 자활
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명 변경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⇒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나.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(안 제2조2)

다. 기금의 용도 추가 신설(안 제3조제6호, 안 제3조제7호)

- 자활기업,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설
-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

라. 자활기업,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방법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9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등 상위법 개정
에 따라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사업을
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활용도 제고와
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○ 주요내용을 보면

기금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로 변경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'2017년 12월 31일'까지로 명시하였으며, 자활기업,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등 기금의 용도를 추가 신설하고 임대지원에 따른 금액,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.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자활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기금용도를 추가 신설하고, 신설에 따른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

또한 상위법에서 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보완개정하여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관 련 법 령

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- 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**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-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[전문개정 2012.2.1]

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- 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설치)**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1.9.8]

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

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